



#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2025.06.11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 목차

0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지역)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2.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제도  
(한국부동산원)

04. 내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 및 추진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 Chapter 01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중 개발 여건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이나 단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주거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기준완화, 인센티브 및 도로, 생활SOC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정비 활성화 유도



# 1. 추진배경 및 추진사항

“

**부산은 공공임대주택 부족과 노후주거지의 증가로 빈집과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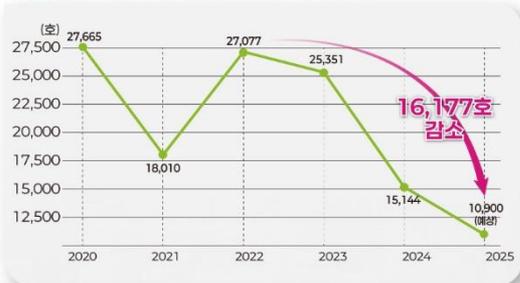
”

Ⅰ 건축연도 및 주거 종류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70% 노후아파트 비중 약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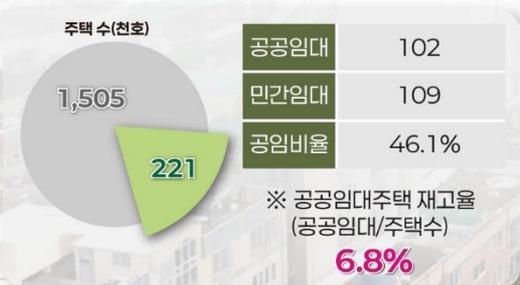
Ⅱ 신규 입주물량(2020~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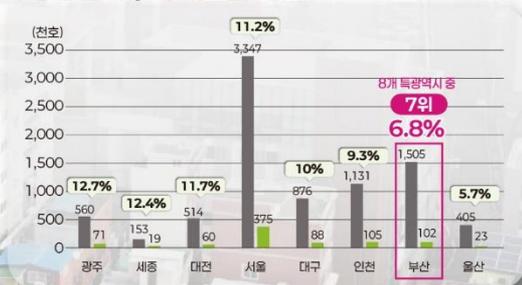
Ⅲ 주택 보급률 비교



Ⅳ 부산 임대주택 현황 및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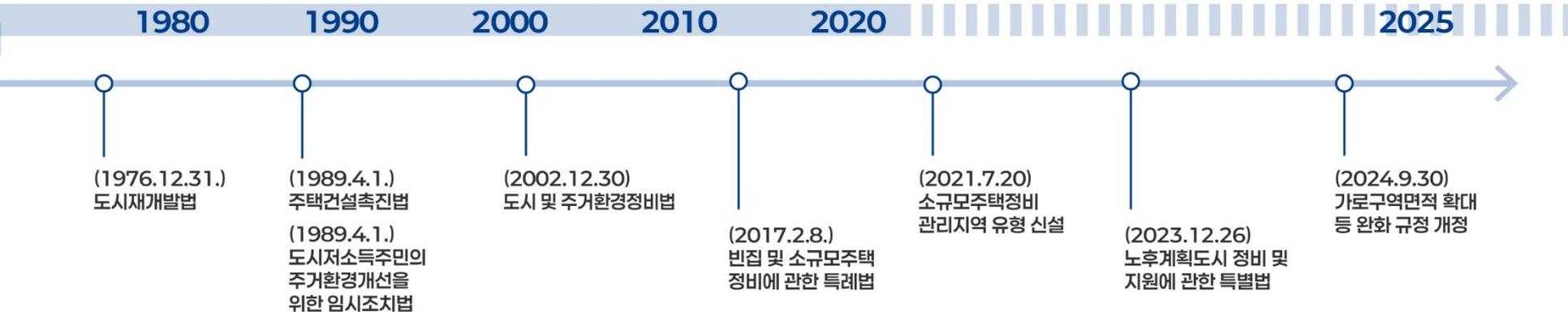
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 2.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도시는 관련 제도와 법령에 의거하여 변화하고,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함

# 도시의 생존전략 +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적을 상향,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도시계획상 인센티브가 제공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이거나 신축과 노후된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고시한 지역

#### 사업 예시

- 사업명: 경기 부천시 원종지구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성과:
  - 내가 참여하여 2년 만에 행정절차 완료
  -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 예정
  - 총 137가구(임대 28가구 포함) 공급
- 특징: 공공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업성 확보



노후 주택 밀집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 [사업 후]



##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0만㎡에 대해 민간 또는 민간+공기업의 참여로 관리계획 수립 신청, 전문기관(용역사)계획 수립

### (수립 요건)

대상지역 면적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 건축물 수 1/20이상일 것

지정 불가지역 :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은 가능

### (수립 및 지정용역 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과  
건축사사무소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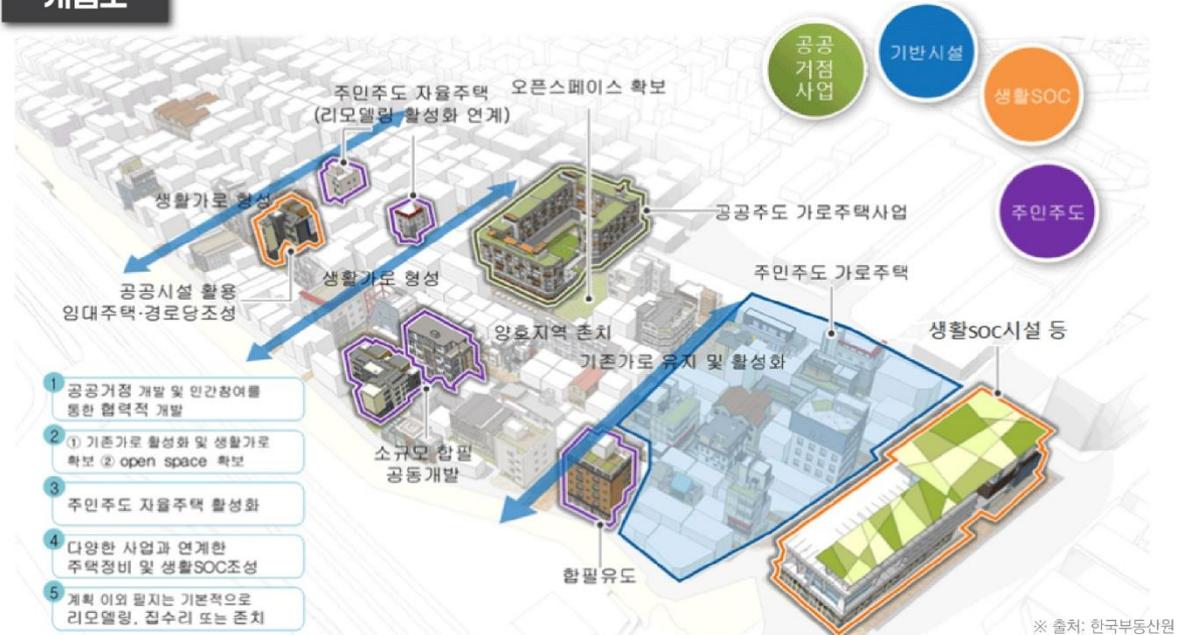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와  
건축사사무소

\*단독(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 예시도



### 개념도



간소화된 설계공모제도 도입

##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됨

##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포함되며, 각 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됨



##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혜택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통합 개발 특례로 사업 추진 가능함

구분		관리지역 內	관리지역 外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가로구역으로 인정</li> <li>폭 4m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 구역을 통과해도 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li> <li>폭 4m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li> </ul>
	가로구역 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만㎡ 미만 까지 가능 (공공 참여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미만까지 가능</li> <li>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만㎡ 미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까지 가능</li> </ul>
	가로주택 정비 사업시행 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만㎡ 미만까지 가능</li> <li>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고, 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할 경우 4만㎡ 미만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 미만까지 가능</li> <li>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만㎡ 미만까지 가능</li> <li>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고, 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할 경우 2만㎡ 미만까지 가능</li> </ul>
	가로주택 정비 사업 수용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 시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가능 (* 그 외 경우는 매도청구권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도청구권 (조합설립 미동일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소송 가능)</li> </ul>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li> </ul>
	자율주택 대상 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예정·해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으로 한정</li> </ul>
	소규모 주택 노후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불량건축물 100분의 50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불량건축물 100분의 600이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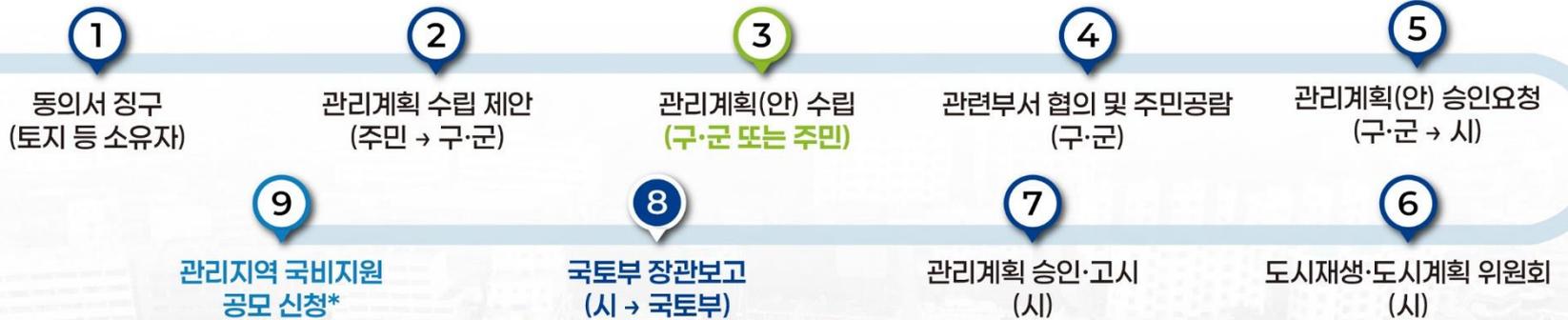
## 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 지정 추진 절차

### ☑ 주민 제안 시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 주민 제안 시 구청 수립 또는 **주민이 직접 수립 가능**

### ☑ 관리계획 수립 대상

- 동의를 득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또는 국토부 공모 선정지역 → 동의 없는 경우 **매몰 리스크** 발생 우려



### \*관리지역 국비지원 공모 신청 절차



##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계획)의 예산지원 및 국비지원

☑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조와 함께 최대 150억 지원 가능함

### (지원규모 \_교부액)

-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0억 지원** (5년 분할 지원)
  -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통해 추산된 금액으로 산정, 부지매입 비용, 공사비,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 5년간 분할 교부 원칙으로 세부 교부비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교부 비율(%)	10	10	20	30	30

### (예산 및 국비 지원)

#### 관리지역 계획 수립 - 예산 지원

- 주민 또는 토지구획공사 등은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승인 신청할 수 있음
- 市에서는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 범위 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 지원 가능함  
※ (보조금 조례) 30~50%
- (지원대상) 국토부 후보지 공모 선정지역 또는 동의를 득한 주민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동의를)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이상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국비 지원

- (지원대상)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관리지역 중 선정**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등
- (지원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0억 지원** ※ (국고보조율) 광역시 50%
- (사업비 지원 가능항목)
  -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
  - ② 계획수립비: 지방비 先 집행 원칙이며, 국비 지원대상 선정 시 최초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가능
  - ③ 빈집 정비사업비: 빈집 정비를 통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0.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절차 비교

☑ 도시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에 복잡한 절차가 적용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 정비에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가 적용



-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소규모재건축 시 안전진단 제외
- (건축규제 완화)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완화

※ (소규모재개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총상향 가능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해당 없음)

## 11.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비교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도시정비법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사업 기간이 짧게 소요되는 경향이 있음

### | 차이점 |

- 정비구역지정 대신 관리구역 수립 단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포함하여 일괄 처리

### (사업 비교)

사업기간 약 10년 단축

부산시 양정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VS	서울시 변동 429-97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66,665m <sup>2</sup>	구역면적	55,572m <sup>2</sup>
1,338세대	세대 수	1,240세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 2020년 착공 ~ 2024년 준공	사업	2022년 관리지역 지정 ~ 2025년 착공 ~ 2029년 준공(예정)
사업기간 <b>17년 소요</b>	사업기간	사업기간 <b>7년 소요</b>

## 1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검토의견 및 활성화방안

- ✓ 기존 조합 구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연계한 통합 개발이 필요함

### (검토 의견)

#### 수도권

- 초기에는 주민제안방식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용역비를 지원하며 추진했으나, 점차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SEOUL

관리 구역

103곳

#### 활성화 방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55건 중 착공 1건, 준공 1건을 제외한 53개소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지연 중**
- 자치구에서는 신규 후보지 물색보다 **현재 조합이 설립된 구역 또는 둘 이상 인접해서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개발 필요
-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0만<sup>2</sup> 미만의 지역과 인접한 구역 간 연계를 통한 개선 필요



### 13. 관리지역 지정 계획(안)-1

☑ 부산 중구 : 영주아파트 2,3블럭은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득하였음

#### 추진 예시1: 중구

- 영주아파트 2, 3블럭은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득하였음

#### 관리지역 지정 시 이점

-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시행구역면적 확대(2만㎡미만) 가능
- 통합개발 가능

대지위치	조합명	건축규모(계획)	추진현황
영주동 72-4 (8,894㎡)	영주아파트 2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215세대	조합설립 (‘23.6.13.)
영주동 73-1 (8,694㎡)	영주아파트 3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2층/지상20층 4개동, 217세대	조합설립 (‘24.1.4.)

→ 현재 조합 설립 등의 사업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개발

## 14. 관리지역 지정 계획(안)-2

### 부산 사하구 : 인접한 위치에 4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추진 중임

#### 추진 예시2: 사하구

- 인접한 위치에 4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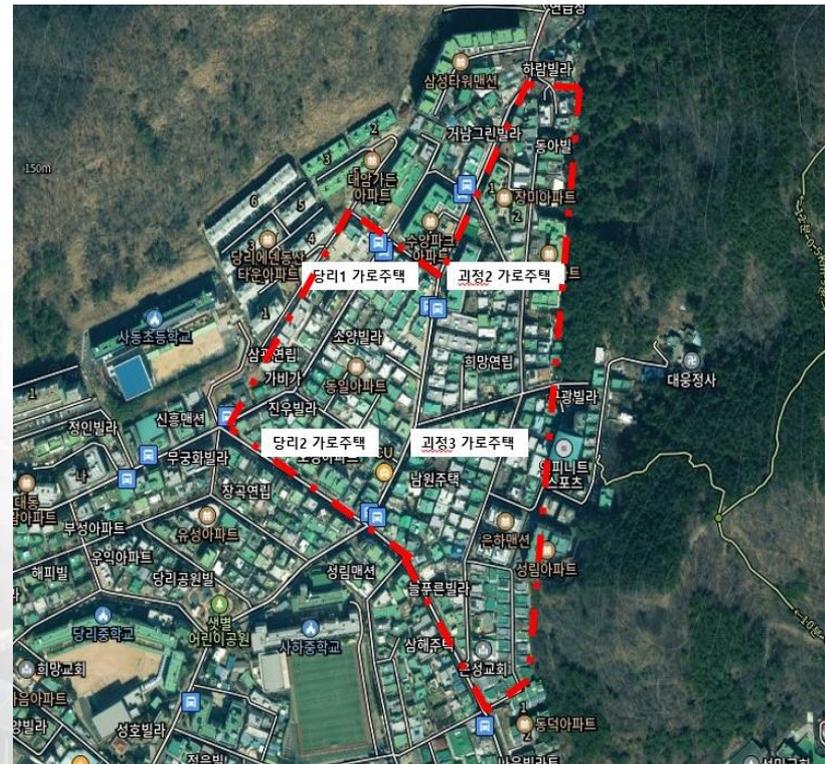
#### 관리지역 지정 시 이점

- 관리지역 + 공공참여(LH등) 시 **4만㎡미만**까지 사업 가능
- 용도지역 상향 및 통합개발 가능

대지위치	조합명	건축규모(계획)	추진현황
당리동 351-5 (6,233㎡)	당리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150세대	조합설립 (‘22.5.24.)
당리동 352-1 (9,956㎡)	당리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2층/지상29층 3개동, 244세대	조합설립 (‘24.6.18.)
괴정동 1074-2 (9,419㎡)	괴정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2층/지상27층 3개동, 225세대	조합설립 (‘23.4.10.)
괴정동 1077-1 (9,846㎡)	괴정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지하4층/지상26층 3개동, 235세대	조합설립 (‘23.11.20.)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개발

→ 현재 조합 설립 등의 사업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1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확대로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 절차가 간소와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됨

01

짧은 사업기간

도시정비법 사업: 15년 이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6~8년으로  
사업기간 축소



02

단독/통합 대규모 단지 조성 가능

2만m<sup>2</sup>: 500세대, 4만m<sup>2</sup>: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주민분담금 감소



03

기준 여건 완화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사업 추진 가능



04

용도지역 상향 가능

심의 시, 용도지역 최대  
준주거까지 종상향 가능



05

국비 지원 혜택

기반시설, 생활SOC  
150억 국비 비원 가능



06

건축 인센티브

용도지역 상향, 이격거리  
완화, 용적률 특례 등



07

관리지역 구역 통일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08

임대주택공급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적률 - 종전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공급



## 1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기대효과

☑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환경 개선, 주택 임대 공급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신속한 사업 추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절차  
간소화

### 주택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슬럼화와 빈집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가능함

### 지역경제 활성화



관리지역 지정용역은  
엔지니어링(도시계획)과  
건축사사무소  
공동도급 가능으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가능**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제도 재정립**

# Chapter 02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



## 1. 추진배경 및 관련규정

✓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노후 불량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입안요청제란?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하여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입안요청을 수락한 경우, 부산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 추진 배경

01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목적

주민이 직접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마련

02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개발 확대

03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신규지정 촉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의2』

2023년 개정

2024.04.03

## 2. 입안요청제의 추진절차

☑️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부산시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함

### 현행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 약 30개월 소요



### 개선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절차 ※ 약 20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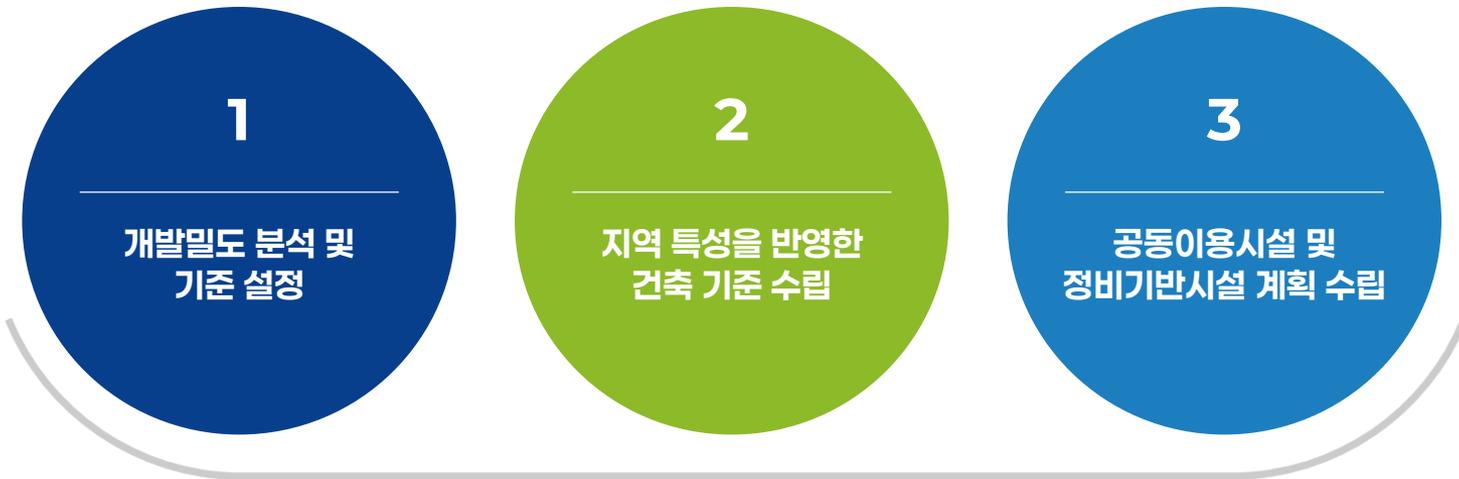


### 3.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기능 회복을 도모함

#### 추진 전략

.....



도시 개발 밀도 계획 수립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건축 높이,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형과 지역 특성, 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축 기준을 제시함.  
**공동 이용시설과 정비 기반시설의 체계적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밀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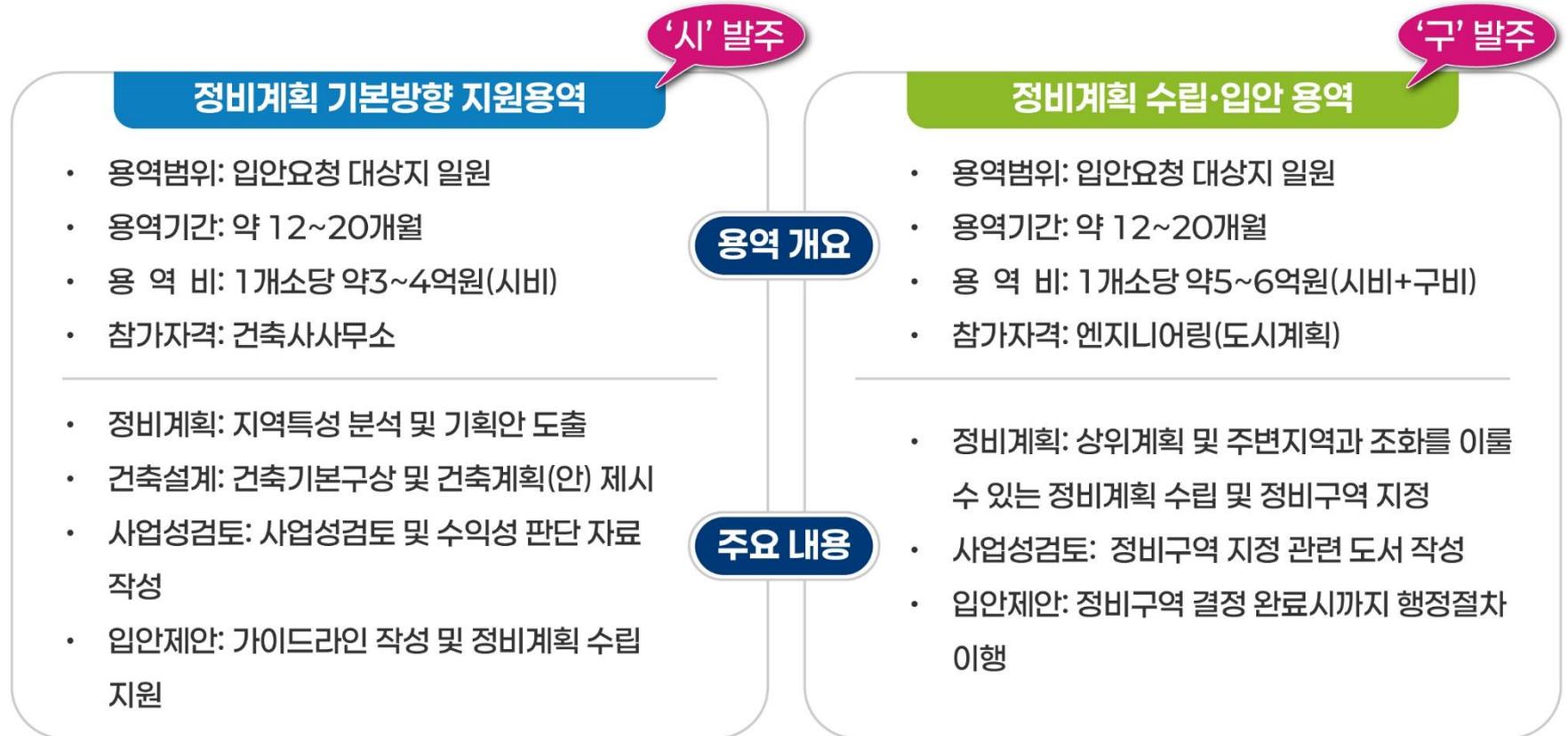
지형, 지역적 특성, 보행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제시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 4. 입안 요청 대상지 용역 추진

☑️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용역은 기본방향 수립 지원과 계획 수립 및 입안 용역으로 나뉨



간소화된 공모제 도입 ➡️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계획과 디자인 적용 기대

## 5. 입안요청제 사업효과

☑ 주민 부담은 줄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신속한 사업추진, 지역맞춤형 디자인으로 주거환경 개선

1

###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 경감 → 용역비 약 8~10억원 절감

- 입안요청 대상지 개소당 시비를 투입하여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은 부산시가 추진, “정비계획 입안용역”은 시와 구가 추진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입체적 도시계획 수립
-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 약3~4억 원(시),
- (정비계획 입안용역) 약5~6억원(시+구)

2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 입안요청지(구역)별로 부산시,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project team)이 전담하여 정비계획 절차 지원
- (사전타당성검토 ~ 정비구역 지정): 약 30개월,
- (정비계획 입안 ~ 정비구역 지정): 약 20개월
-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3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주거공간 조성

-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과 건축디자인 적용

## 6. 진화하는 공공정비사업 홍보 방안

공공정비사업 홍보는 관계자 교육, 전문가 설명, 주민 설명회, 홍보물 제작으로 입안요청제 이해와 관심을 높여줌

### 1. 구군 관계자 교육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교육

### 2. 도시·건축 전문가 등 설명회

엔지니어링(도시계획) 사업자 및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및 입안 요청제도 홍보

### 3.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입안요청제 관심있는 지역 위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4. 홍보물 제작

입안요청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시작이 막막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부산시가  
첫단추를 채워드립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란?**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하여 구 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 군에서 입안요청을 수락한 경우, 부산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토지동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구 군에 입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난 경우
-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생활권계획)
- 현재지번 등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동의서, 구역 범위 및 건축용 현황에 관한 서류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 참조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절차**

- 정비계획 입안요청**  
토지동소유자 ● 구·군
- 정비계획 입안여부 검토**  
구·군(부산시 협의)
- 정비계획 입안여부 결정 통지**  
구·군 ● 토지동소유자, 부산시  
4개월 이내(2개월 연장가능)
-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부산시 ● 구·군 ● 토지동소유자  
\*기본방향 수립 용역 추진
- 정비계획 수립**  
토지동소유자 ● 구·군 ● 토지동소유자

**정비계획 기본방향의 내용은?**

- 유치로, 간벽로, 놀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일도
- 지형, 지역의 특성, 풍안,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
- 정비기본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전문가 자료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수립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 통합적 계획 수립**  
만·관 협업으로 공공성과 사업성 고려한 통합적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 신속한 사업 착수**  
초기비용 부담 경감,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 착수 기간을 단축합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계획,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조성합니다.



**Q & A**

**감사합니다**